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건설근로자 고용지원금 요건 완화

여름·겨울 1개월씩 혜택 늘려

계절적인 요인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계속고용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지원규모는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부는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지원금의 사업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개정안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를 기존 '6월~8월, 12월'에서 '6월~9월', '11월~다음 연도 2월'로 계절별로 각각 1개월씩 늘렸다.

또 지원금 규모도 종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에서 3/4으로 높였다. 다만 1일 3만 5천원의 상한선은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악천후로 월 6일을 초과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고용계약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입 첫해인 작년에는 당초 예산 29억4,100만원에 42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이 저조해 예산을 2억6,200만원으로 삭감했다. 그나마 집행실적은 24명에 400만원 지원에 그쳐 계획대비 집행률은 1.5%에 불과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확 줄었다

2월 585건 → 3월 34건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사례가 대폭 줄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전국 건설현장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건수가 34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처음으로 단행한 고강도 현장점검 때 적발된 건수(585)의 1/17에 그쳤다.

이번 점검 대상과 강도가 앞선 조사(29개 산하기관 및 지방청 현장, 2월 1,738곳)와 같았고, 자연증감(완공현장 제외, 신규현장 추가)현장 차이만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라한 게 국토부 평가다.

특히 최근 공공공사 발주 증가로 산하기관 및 지방청 현장이 더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의 성과이며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관행이 정착해 가는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관행이 뿌리내릴 때까지 산하·소속기관 현장 중심의 월별 정기점검 및 보고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민간공사 현장, 2차 협력사 대금 지급 조사도 지속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도급TF 개선안, 건설 산업선진화 방안 등에 포함된 하도급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법제화에 시동을 건다.

서울 모든 초·중·고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태양광시스템 등 '에코스쿨 조성 사업' 추진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에코스쿨(Eco-School)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시청에서 에코스쿨 조성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올해 19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등 총 31개 학교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에 6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를 에코스쿨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학교건물에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또 조명과 단열 등 시설을 에너지고효율시설로 교체해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을 에너지절약형 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조정의무 위반 '벌점·과징금'

위반 유형·횟수 따라 부과...공정위, 기준 명시해 시행

앞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제기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청에 대해 원수급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과한 후 이들 점수의 합계를 기초로 결정하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에 대해 4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과징금은 부과점수가 80점을 초과하면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도급위반금액이 1억원이면 1,6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0점 이하의 경우에는 1%를 부과한다. 위반금액 1억원이라면 20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조정협의 의무위반 시 부과점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과 같이 40점이다.

공정위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범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묶어 같은 위반 유형에 속하는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한 한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하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 행위의 경우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등과 함께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 행위'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중재사건 접수율 63% 증가

분쟁금액도 107% 증가해

국내외 중재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4월 30일자로 접수된 국내외 중재사건이 12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5건에 비해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에 따르면 국내사건은 90건으로 45%, 국제사건은 32건으로 146% 증가했고, 분쟁금액은 941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454억 원에 비해 107% 증가했다.

특히 건설사건의 경우 2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1건에 비해 30% 증가했으며, 분쟁금액도 1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9억 원에 비해 13%가량 증가했다. 이는 중재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 122건 중 약 22%를 차지했다.

최근 접수된 건설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사후중재합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중재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금액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로 공공분야 사건은 지난해 9건보다 많은 10건이 접수됐으며 금액은 96억 원으로 지난해 69억 원과 비교해 공공분야 사건의 고액화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인테리어 및 실내공사 등 소액사건의 접수가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12건, 50억 원과 비교해 17건, 38억 원으로 건수는 30% 증가한 반면

금액은 31%가량 감소했다. 분쟁금액도 평균 4억2천만 원에서 2억2천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개인의 중재제도 활용이 두드러져 금액의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건설 분쟁은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하고 분쟁의 원인이 양 당사자 사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돼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고 입증에 어려워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원의 중재를 이용하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3만 하도급사 서면 실태조사

공정위, 원도급사 대금 횡포 등 드러내면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만 개 건설사를 비롯해 제조·용역업체

▲ 건설업종 실태조사 설명회(6월)

일자	시간	지역	장소
6.1(월)	14 : 00	대전·충남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6.2(화)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대강당
6.3(수)		경기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
		광주·전남	KT광주정보통신센터 대강당(3층)
6.4(목)		서울	전문건설회관 국제회의실(3층)
		인천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1층)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건설업종의 수급사업자 3만 개와 제조·용역업종의 원사업자 5천 개 및 수급사업자 6만5천 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이나 인하 행위, 어음할인료의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와 어음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사용 실태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원사업자에 대해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서면조사에 답하지 않거나 자진 시정을 거부한 업체는 현장 조사를 벌여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에 앞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건설업종의 경우 6월 4일까지 설명회가 열린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대상 업체수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서면조사를 통해 총 1만3천여 개 업체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18만여 개 중소하도급 업체에 3,252억 원의 미지급대금을 지급토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